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6,361,312	10,390,839
일반회계	317,117,001	9,513,510
특별회계	29,244,311	877,329
기타특별회계	29,244,311	877,3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25,539	45,766
수질개선특별회계	14,538,240	436,1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3,875	19,916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903,458	117,104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5,362	11,56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92,274	77,768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59,503	19,7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47,022	13,41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529,038	135,871

제 2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67,64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